

# 경력증명 확인

#### 1. 활용 및 조회시점

- □ 서류전형 지원자의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 평가 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며, 평가위원에게 증빙서류가 제공 될 경우 개인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됨
- □ 면접 후 ~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기관에 조회(필요시)

### 2. 경력증빙 제출 내역 및 조회방법

지원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**입사지원 시** 아래 1),2) 두가지 스캔본이 제출되어야하며, **면접전형 시** 아래 1),2),3) 세가지 원본이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.

#### 1) 경력(재직)증명서

-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, 지원분야의 지원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업무내용을 수행했다는 내용 및 기간이 구체적(년.월.일)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.
- \* 업무내용 또는 직무가 불명확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\*\* 경력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계산되나, 증명서상 기간 또는 증명서 발급일이 공고마감일 이전인 경우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\*\*\* 경력 산정 시 경력별 월 단위 미만은 절사됩니다.
- \*\*\*\* 경력증명서 예시 양식은 "붙임 4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2)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

-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.국민연금.건강보험.산재보험의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(예시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) 중 1종을 제출하여 근무기관. 근무기간 등을 근무기관 경력(재직)증명서와 비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## 3) **소득금액 증명**(면접전형 시 제출)

- 국세청이 발급한 '소득금액증명'을 제출하여 근무기간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허위경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합니다.

#### 4) 경력 인정

- 서류전형 시 ①경력증명서와 ②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가 중복되는 기간 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.
- 입사지원 시 제출되지 않아 서류심의 때 평가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추후 제



출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면접전형 시 소득금액 증명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, 서류에 인정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.

## 3. 기타

채용	공정성	확보를	위해	공정채용	·가이드북	·(인사혁신처)어	따라	공무원	응시요	1건
진위	확인 빙	t법을 준	용하이	여 시행합	니다.					

경력(	[재직)증명시	네, 보험 기	가입기간, <i>스</i>	<b>└</b> 득금액증명	내역이	일치하지	않거나 -	불확실한
경우	지원자에게	ᅦ 근로계	약서, 급여	1 입금내역	등 추기	소명자료	제출을	요구해
확인	할 수 있습	니다.						

경력증명을	위한 4대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
제3자 제공	동의를 해주셔야하며, 미동의시 경력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